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등에 대한 ‘수사’ 권한이 폐지되고 해당 범죄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및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법률 제17646호, 2020.12.15 공포, 2024.1.1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렬·직급 등의 명칭 중 ‘수사’를 ‘조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인사 운용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경력관 임용 및 직원 특별승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심사위원회 등의 구성과 임기제직원 임용 가능 직무분야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하여 탄력적 인사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리더십과 전문성이 있는 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3·4급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상향하고, 직권 면직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렬·직급 등의 명칭 중 ‘수사’를 ‘조사’로 변경(안 제2조의2, 별표 1, 별표2, 별표6)

1) 전문관 임용 가능 직무 분야 및 전문관 직급표 내의 직렬·직급 명

칭 중 ‘수사’를 ‘조사’로 각각 변경함.

- 2) 특정직직원의 직급표 중 ‘수사’직 직렬 명칭을 ‘조사’직으로, 계급별 각 명칭 중의 ‘수사’를 ‘조사’로 각각 변경함.

나. 전문경력관 임용 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조의3 신설, 제2조, 제2조의4, 제15조, 제30조, 별표4)

- 1) 국가정보원장이 일반직직원의 직위 중 특수업무 분야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정보원장이 전문경력관직위 지정시 직무 성격에 따른 가군·나군·다군의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도록 하고, 직무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은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고 그 밖의 전문경력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임용함.
- 3) 전문경력관은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며, 그 응시연령의 하한은 20세 이상으로 정함.
- 4) 비상대비업무는 장기 재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 분야이므로, 해당 업무 담당자를 임기제직원이 아닌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도록 함.

다. 탄력적 인사제도 운용(안 제2조의5, 제12조의4, 제26조)

- 1) 특정 분야로만 임용이 가능한 현행 임기제직원의 직무 분야 제한을 없애고,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직무 분야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2) 3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해당 위원회 개수 제한을 없애고, 국가정보원장이 승진후보추천위원회·승진심사위원회·승진선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하도록 함.

3) 국가정보원장이 직원의 휴가·당직·출장 및 비상근무 외에 근무 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원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 분야 또는 특수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마. 직원 특별승급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업무행태 개선 또는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1호봉 특별승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특별승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바. 승진소요최저연수 변경(안 제12조의2)

3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이상’으로 신설하고, 4급 승진소요최저연수를 ‘3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상향함.

사. 경력평정 원칙 명시 등(안 제18조)

경력평정은 정기 승진인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경력평정시 직무 난이도와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아. 직권면직 절차 구체화(안 제27조의2 신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임명권자가 직원을 직권으로 면

직시키기 위해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는 절차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함.

자. 일반직직원의 직렬 조정 및 신설(안 별표3)

“냉난방” 직렬 명칭을 “기계”로 변경하고, 상시운영이 필요한 “영선” 직렬을 신설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일반직직원”을 “일반직직원(제2조의3에 따른 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제1호 중 “정보·보안·수사”를 “정보·보안·조사”로 한다.

제2조의3 및 제2조의5를 각각 제2조의5 및 제2조의6으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전문경력관)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직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직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한다.

③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임용한다.

1. 전문경력관 가군 :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하고, 대통령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장에게 임용권을 위임

2.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임용

④ 전문경력관은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전문경력관 규정」 제10조,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조의5(종전의 제2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제2항”으로, “임용자격”을 “임용자격, 직무 분야”로 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4(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정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임용 방법, 담당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국가정보원법」 제10조”를 “「국가정보원법」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원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 분야 또는 특수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특별승급) 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업무행태 개선 또는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특별승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된 특별승급심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위원은 1·2급 공통직위에 보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를 준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1호)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1. 3급: 1년 이상

제12조의4제1항 중 “승진후보추천위원회, 3개의”를 “승진후보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중 “임기제직원”을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직원”으로, “전문관”을 “전문관, 전문경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력평정은 정기 승진인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경우에는 “갑”경력 및 “을”경력에 한하여 평정하고, 해당 경력기간 중 수행한 각 직무의 난이도·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 중 “휴가·당직·출장”을 “휴가·당직·출장·근무시간”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계급별 징계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직권면직 의견·동의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직권면직 의견·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

석,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은 “직원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징계심사”는 “직권면직 심사”로 본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직원 및 전문관”을 “직원, 전문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원 및”을 “직원, 전문경력관 나군·다군 및”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진술권”을 “출석 진술”로 한다. 별표 1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	조사 서기관	조사 사무관	조사 주사	조사 주사보	조사 서기	조사 서기보
----	-----------	-----------	----------	-----------	----------	-----------

별표 2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전문	조사전문관
------	-------

별표 3의 운영지원의 냉난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계						기계 주사	기계 주사보	기계 서기	기계 서기보
----	--	--	--	--	--	----------	-----------	----------	-----------

별표 3 운영지원의 전기란 다음에 운영지원의 영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선						영선주사	영선 주사보	영선서기	영선 서기보
----	--	--	--	--	--	------	-----------	------	-----------

별표 4 중 “일반직”을 “일반직(전문경력관직 제외)”로 하고, 별표 4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직 전문경력관직		20세 이상
---------------	--	--------

별표 6의 정보 중 “수사”를 “조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진술권”을 “출석 진술 포기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직권 면직 [] 의견
[] 동의 요구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직권 면직 사유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 면직에 대한 [] 의견 [] 동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임용권자)

직인

징계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직권 면직 [] 의견
[] 동의 의결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급) ① (생략) ② <u>일반직직원의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3과 같다.</u>	제2조(직급) ① (현행과 같음) ② <u>일반직직원(제2조의3에 따른 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u> -.
제2조의2(전문관) ①·② (생략) ③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문관을 임용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적 경험축적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통하여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u>정보·보안·수사</u> 분야 2. (생략) ④ ~ ⑥ (생략) <u><신 설></u>	제2조의2(전문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 ----- <u>정보·보안·조사</u> --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조의3(전문경력관)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직원 직위 중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의 직위를 전문경력관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경력관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직

무의 특성·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의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당한다.

③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임용한다.

1. 전문경력관 가군 :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원으로 하고, 대통령은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장에 임용권을 위임

2.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원장이 임용

④ 전문경력관은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 「전문경력관 규정」 제10조,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업무 분야, 제2항에 따른 직위군 구분 및 그 밖에 임용자격, 인사관리 등 전문경력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3(임기제직원) ① 법 제3조에 따라 임기제직원으로 임용

제2조의5(임기제직원) <삭 제>

할 수 있는 직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 등 특수업무 분야

2. 비서·정보입력 등 정보업무 지원 분야

3. 의료·통역 등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

② 임기제직원은 원장이 임용하고, 그 임용 요건 및 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임용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③ ~ ⑦ (생략)

제2조의4(비상대비업무담당자) 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정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임기제직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임용 방법, 담당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① -----

----- 제10
조제1항, 제2항 -----

----- 임용자격,
직무 분야 -----
--.

②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2조의4(비상대비업무담당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정원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임용 방법, 담당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
기간은 6년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의5 (생략)

제4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①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신규 채용은 학력·자격·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국가정보원법」 제10조에 따라 국정원에 파견근무 중인 겸직 직원(이하 “겸직직원”이라 한다)을 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생략)

<신 설>

제2조의6 (현행 제2조의5와 같음)

제4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①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정보원법」 제12조--

5. (현행과 같음)

6. 원장이 정하는 특수한 직무
분야 또는 특수한 지역에서

② · ③ (생략)

<신설>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정직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임용하
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특별승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향
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업무행태 개선 또는 행정발
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② 특별승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위원장 1명과 위
원 4명으로 구성된 특별승급심
사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차
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위원은 1·2급 공통직위에 보
직된 직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급에 관한 사
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
를 준용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
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2(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직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4급: 3년 이상
2. ~ 5.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의4(승진심사위원회 등) ①
원장은 승진대상의 추천, 심사
및 선발을 위하여 승진후보추천
위원회, 3개의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선발위원회를 각각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3개의 승진심
사위원회는 승진후보추천위원
회가 추천한 직원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이 경우 3개의 승진
심사위원회는 상호 차단된 상태
의 동일한 심사조건에서 동시에
심사한다.

③ 승진선발위원회는 3개의 승
진심사위원회가 추천한 직원 중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추천위

-----.

1. 3급: 1년 이상

2. ---- 4년 ----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
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승진심사위원회 등)

① -----
----- 승진후
보추천위원회, -----

-----.

② 제1항에 따른 각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삭 제>

<삭 제>

원회,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
선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 증진
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
직직원 및 일반직직원(임기제직
원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근
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하고,
전문관 및 임기제직원에 대해서
는 근무성적평정을 한다.

제18조(경력평정) <신 설>

① ~ ④ (생 략)

<신 설>

제15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
정의 실시) -----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직원--

----- 전문관, 전문
경력관 -----
-----.

제18조(경력평정) ① 경력평정은
정기 승진인사 시행일을 기준으
로 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5급 이상의 경우에는 “갑”
경력 및 “을”경력에 한하여 평
정하고, 해당 경력기간 중 수행
한 각 직무의 난이도·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26조(휴가 등) 직원의 휴가·당직·출장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6조(휴가 등) ----- 휴가·당직·출장·근무시간 -----

-----.

제27조의2(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직권면직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계급별 징계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직권면직 의견·동의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

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직권면직 의견·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대상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사건”은 “직권면직 사건”으로, “징계심사”는 “직권 면직 심사”로 본다.

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한다.

1.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 및 전문관에 대한 징계사건

2.·3. (생략)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

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직원, 전문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

2.·3. (현행과 같음)

③ -----

의 직원 및 임기제직원(「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 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사건을 심사·의결한다.

④ (생략)

제37조(징계 대상자의 출석) ① (생략)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통지서 아래 쪽의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별표1]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급표

급 직급	계 직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보 서기관	정보 사무관	정보 주사	정보 주사보	정보 서기	정보 서기보
정보	보안	보안 서기관	보안 사무관	보안 주사	보안 주사보	보안 서기	보안 서기보
	수사	수사 서기관	수사 사무관	수사 주사	수사 주사보	수사 서기	수사 서기보

----- 직원, 전문경력관 나군 .
다군 및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징계 대상자의 출석) ① (현행과 같음)

② ----- 않을 -----

----- 출석 진술 -----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1]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급표

급 직급	계 직렬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보 서기관	정보 사무관	정보 주사	정보 주사보	정보 서기	정보 서기보
정보	보안	보안 서기관	보안 사무관	보안 주사	보안 주사보	보안 서기	보안 서기보
	조사	조사 서기관	조사 사무관	조사 주사	조사 주사보	조사 서기	조사 서기보

[별표2] 전문관의 직급표

직군	직렬	직급
정 보	정보전문	정보전문관
	보안전문	보안전문관
	수사전문	수사전문관
이 공	공업전문	공업전문관
	통신전문	통신전문관
	전산전문	전산전문관

[별표2] 전문관의 직급표

직군	직렬	직급
정 보	정보전문	정보전문관
	보안전문	보안전문관
	조사전문	조사전문관
이 공	공업전문	공업전문관
	통신전문	통신전문관
	전산전문	전산전문관

[별표3] 일반직직원의 직급표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군	직렬					
운 영 지 원	운영지원		운영지원 주사	운영지원 주사보	운영지원 서기	운영지원 서기보
	통신수집		통신수집 주사	통신수집 주사보	통신수집 서기	통신수집 서기보
	사진		사진 주사	사진 주사보	사진 서기	사진 서기보
	수집		수집 주사	수집 주사보	수집 서기	수집 서기보
	정보통신		정보통신 주사	정보통신 주사보	정보통신 서기	정보통신 서기보
	냉난방		냉난방 주사	냉난방 주사보	냉난방 서기	냉난방 서기보
	수송		수송 주사	수송 주사보	수송 서기	수송 서기보
	발간		발간 주사	발간 주사보	발간 서기	발간 서기보
	정비		정비 주사	정비 주사보	정비 서기	정비 서기보
	전기		전기 주사	전기 주사보	전기 서기	전기 서기보
	<신 설>					
	안전	안전 사무관	안전 주사	안전 주사보	안전 서기	안전 서기보

[별표3] 일반직직원의 직급표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군	직렬					
운 영 지 원	운영지원		운영지원 주사	운영지원 주사보	운영지원 서기	운영지원 서기보
	통신수집		통신수집 주사	통신수집 주사보	통신수집 서기	통신수집 서기보
	사진		사진 주사	사진 주사보	사진 서기	사진 서기보
	수집		수집 주사	수집 주사보	수집 서기	수집 서기보
	정보통신		정보통신 주사	정보통신 주사보	정보통신 서기	정보통신 서기보
	기계		기계 주사	기계 주사보	기계 서기	기계 서기보
	수송		수송 주사	수송 주사보	수송 서기	수송 서기보
	발간		발간 주사	발간 주사보	발간 서기	발간 서기보
	정비		정비 주사	정비 주사보	정비 서기	정비 서기보
	전기		전기 주사	전기 주사보	전기 서기	전기 서기보
	염선		염선 주사	염선 주사보	염선 서기	염선 서기보
	안전	안전 사무관	안전 주사	안전 주사보	안전 서기	안전 서기보

[별표4] 신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임용계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특정직 5급	20세 이상 34세 이하	·
특정직 6급		20세 이상 45세 이하

[별표4] 신규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임용계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
특정직 5급	20세 이상 34세 이하	·
특정직 6급		20세 이상 45세 이하

특정직 7급·8급	20세 이상 31세 이하	20세 이상 43세 이하
특정직 9급	20세 이상 29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u>일반직</u>	20세 이상 29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u><신 설></u>		

[별표6] 특정직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
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직군	계급	6급·7급	8급·9급	
	직렬		필 수	선 택
정 보	정보	국가정보 직격성검사 (NIAT), 논술, 영어	국어(한문 포함), 일반상식 (한국사 포함), 영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여학 중 1과목
	보안			
	수사			
이 공	전산			전자공학, 전자계산학, 물리학, 화학, 수학, 생물학 중 1과목
	통신			
	공업			

[별지 제6호서식] 출석통지서

진술권 포기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국가정보원 고등(보통)징계위원장 귀하			

특정직 7급·8급	20세 이상 31세 이하	20세 이상 43세 이하
특정직 9급	20세 이상 29세 이하	20세 이상 40세 이하
<u>일반직</u> <u>(전문경력관직</u> <u>제외)</u>	20세 이상 29세 이하	20세 이상 45세 이하
<u>일반직</u> <u>전문경력관직</u>	—	<u>20세 이상</u>

[별표6] 특정직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
험등의 필기시험 과목

계급		8급·9급	
직군	직렬	필 수	선 택
정 보	정보	국어(한문 포함), 일반상식 (한국사 포함), 영어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여학 중 1과목
	보안		
	조사		
이 공	전산		전자공학, 전자계산학, 물리학, 화학, 수학, 생물학 중 1과목
	통신		
	공업		

[별지 제6호서식] 출석통지서

출석 진술 포기서			
인적 사항	성명		
	주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국가정보원 고등(보통)징계위원장 귀하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연 락 처	(02) 2197 - 9166